

우리 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·마케팅을 위해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 『2026년 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사업』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1. 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개요

사업목적

- 한류 콘텐츠(드라마, 예능, 웹드라마 등)를 활용한 다부처 협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

지원내용

	세부사항
지원대상	수산식품 중소기업 수출업체
지원품목	수산가공식품 전반 <small>* 수출용 HS코드가 수산식품인 경우에 지원</small>
지원규모	5개사 (온라인특화PPL)
지원한도	온라인 PPL + 한류콘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: 90백만원
지원비율	중소기업 80%, 중견기업 70%
지원기간	`26.1.1 ~ `26.11.30
기타사항	업체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<small>* 3년 이상 K-브랜드 한류마케팅을 연속하여 지원받은 업체는 4년 차 지원사업 참여 불가</small> <small>* `25년 선정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과거 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미적용</small>

유의사항

- **평가점수(계량+비계량) 고득점 순으로 상위 5개사 선정**
- 총 사업비 내, 정부출연금(국비)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
- 총 사업비는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(VAT) 미포함, 부가가치세(VAT)는 참가기업 부담
- 최종 선정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·승인 후 사업 추진
- 배정예산은 8월경 중간점검을 통해 예산집행률,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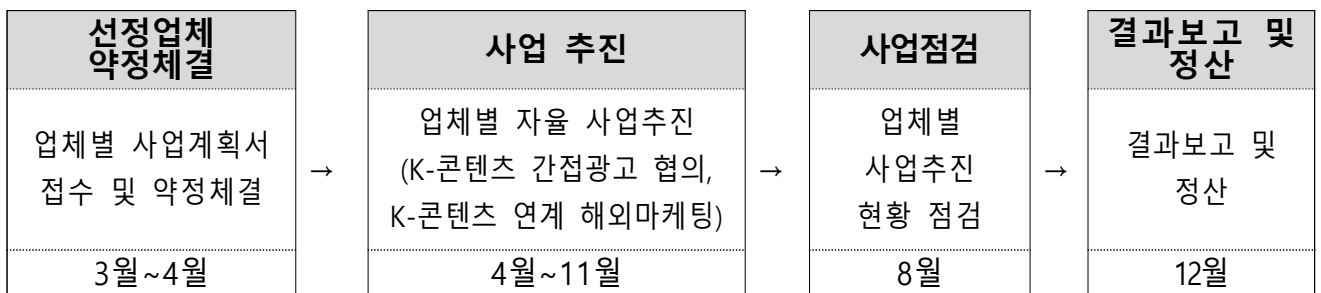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내용

- 온라인특화 PPL(5개사) : 90백만원 한도 내 온라인PPL 제작비용 및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(해수부)

구 분	모집 규모	지원 내용		주관기관	업체당 지원금액	지원한도
온라인 특화 PPL	5개사	1차	온라인 한류콘텐츠 매칭 및 PPL 제작 비용 지원 * 소요 예상액 : VAT제외 80백만원(VAT 미지원)	aT (해수부 / 문체부협조)	최대 90백만원	집행금액 100%
		2차	콘텐츠 활용 해외 홍보·마케팅 비용 지원 ① 해외 온·오프라인 유통업체 판촉 ② 해외 미디어홍보 -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SNS 등 활용 홍보 ③ 한류콘텐츠 활용 및 제작지원 - 콘텐츠진흥원 지정 K-콘텐츠 총괄 마케팅사의 기본 제공사항을 초과하는 PPL 라이선싱 및 부가 홍보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- 한류 셀럽 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 활용 비용 지원	aT (해수부)		집행금액 70~80% (중소80, 중견70)

(참고) PPL 종류 및 내용			예 시
방송 노출형 (드라마, 예능)	넷플릭스 등 글로벌OTT를 통해 해외 방영 예정 국내드라마 및 예능 등 콘텐츠 내 특정 회차에 제품 간접 노출		국내방송사 드라마 내 품목 노출 및 OTT송출
온라인	노출형	Youtube 등 동영상플랫폼에 송출되는 웹예능, 드라마 등 콘텐츠 특정 회차에 제품 간접노출	유튜브 예능 내 품목 노출
	기획형	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웹예능, 드라마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, Youtube 등 동영상플랫폼 송출	품목 홍보용 콘텐츠 기획 및 유튜브 채널 송출

- 추진체계



2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- 휴·폐업 기업
-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/기업
 - * 단,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계열회사 포함)
- aT 및 타기관(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, KOTRA 등) 유사 사업(PPL 및 관련 홍보사업) 참가사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방법

-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 온라인 신청
 -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 필요, 자가 역량진단 실시) → 상단메뉴 [사업신청] → [모집공고/신청] → 2026년 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(온라인 PPL) 모집공고 내 [사업신청] 버튼 클릭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 - * 온라인 접수 원칙(우편 접수, 퀵, 택배, 방문 접수 불가)

□ 신청기간 : 2026.03.10.(화) ~ 2026.03.25.(수) 18:00 限

□ 신청서류

- ① (필수)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인지조서(작성양식 제공)
- ② (필수)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
- ③ (필수) 사업자등록증명원, '25년 표준재무제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, 4대보험 납부증명
 - * 사업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(aT One Click) 활용하여 제출 가능(첨부 확인)
- ④ (필수)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반서류(온라인 or 오프라인 / 기 제출업체 생략가능)
- ⑤ (선택)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증빙(해당기업)
- ⑥ (선택)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(해당기업)
 - *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

4. 심사 및 결과발표

□ 심사방법 및 항목

- (1차) 서류심사(계량/40점) : 참가신청서, 증빙서류 검토 (2배수)

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150만불 이상	100만불 이상	50만불 이상	10만불 이상	10만불 미만
수출 경쟁력	○ 수산물 수출금액(불) * 최근 3개년('22~'24년) 산술평균 수산물 수출금액	15	15	12	9	6	3
	○ 수출금액 증가율(%) * 최근 3개년 평균	10	10	8	6	4	2
재무 건전성	○ 자기자본비율(%) * 자본총계/자산총계*100	10	10	8	6	4	2
	○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	5	5	4	3	2	1
감점	○ 기 지원업체 전년도 배정 예산 집행률	-5	-1	-2	-3	-4	-5
	○ 신규업체참여, 품질인증, 수상실적 등	4	하단 가점 사항 참조				
총점(최대)		44	* 가점 최대 4점 부여 시				

인증 및 특허 예시

(국내) ISO, HACCP, GMP, 친환경인증(유기수산물 등), 수산물품질인증 등

(해외) 미FDA, FSSC22000, HALAL(JAKIM, MUI, MUIS, IFANCA 등), 러시아 EAC, 러시아CU, KOSHER, SQF2000, IFS, BRC, 중국보건식품, Global-GAP, 일본 AS,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등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용 인증

* 인증 및 특허는 **접수마감일 기준** 유효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개수로 산정

- 가점사항(최대 4점)

가점	세부사항
1개당 3점	· 기존 수혜기업이 아닌 신규업체
1개당 2점	·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·단체
	· K.FISH 브랜드 제품 업체(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)
	·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(최근 3년간, '23~'25)
	·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(최근 3년간, '23~'25)
	·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
	·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
1개당 1점	·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
	· 사회적기업·여성기업·장애인기업 등

* 가점 내 세부사항 중복 인정 불가 (예 : 브랜드 대전 입상 2회일 경우 1회만 인정)

○ (2차) 비계량평가(60점) : 참가계획서, 업체별 PT발표(10분 내외)

* 1차 계량평가 결과 상위업체(2배수)에 한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평가회 진행

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			수	우	미	양	가
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○ 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	15	15	12	9	6	3
제품경쟁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 ○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○ 한류 콘텐츠 활용 직간접 광고 적합성 	15	15	12	9	6	3
수출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시장 수출 경력 ○ 전담인력, 해외 거래선 보유, 유통망 입점현황 등 수출 인프라 	10	10	8	6	4	2
성과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목표(수출목표, 유통망 확대, 신규입점품목 등)의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	10	10	8	6	4	2
정책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류 콘텐츠 활용계획 (재배포 계획, 활용 플랫폼 등) ○ 한류 콘텐츠 활용 해외 온·오프라인 판촉행사 계획의 구체성 	10	10	8	6	4	2

선정발표 :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